

국 토 교 통 부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등록임대주택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노후기반시설의 선제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5급 1명, 5급 1명), 드론산업 혁신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항공안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5급 1명, 5급 1명, 6급 3명), 조직혁신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택시산업 혁신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2022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지방항공청에 관제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6급 9명, 7급 11명), 비상접근관제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사무국에 토지수용사업 공익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3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과 주거복지정책관 1개 과(민간임대정책과)를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주거복지정책관에 평가 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한편,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두고 있는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 도래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두고 있는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간을 2020년 2월 2

8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항공교통본부에 관제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던 건축안전팀을 폐지하는 대신 건축안전과를 신설하고,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팀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을 총액인건비로 각각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토정책과·수도권정책과·지역정책과·하천계획과·산업입지정책과·복합도시정책과·도시정책과·도시경제과·도시활력지원과·녹색도시과·건축정책과·녹색건축과·건축문화경관과 및 건축안전팀을”을 “국토정책과·수도권정책과·지역정책과·하천계획과·산업입지정책과·복합도시정책과·도시정책과·도시경제과·도시활력지원과·녹색도시과·스마트도시조성팀·건축정책과·녹색건축과·건축문화경관과 및 건축안전과를”로, “건축안전팀장”을 “스마트도시조성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8항(종전의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안전팀장”을 “건축안전과장”으로 한다.

⑭ 스마트도시조성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2.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리
3.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4.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6.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 국가 시범도시 관련 연구·개발

제8조제9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제10항에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운영 및 개선
14.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 검토·조정
15.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등에 관한 사항
16. 기반시설 실태조사 및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
17.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8.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19.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제4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국립항공박물관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철도국에 철도정책과·철도운영과·철도건설과·철도투자개발과·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철도안전정책과·철도운행안전과 및 철도시설안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⑧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3. 민간투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 민간투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고시에 관한 사항
7.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의 건설 및 운영 단계의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8. 민간투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자금 재조달 등 사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제29조제5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비상용 통합접근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020년 2월 28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택시산업 혁신성장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2월 28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별표 7 총계 “979”를 “993”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977”을 “991”로 하며, 일반직 계 “967”을 “981”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9”를 “60”으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6”을 “27”로 하고,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5”를 “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항공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을 “5”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을 “2”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7”을 “58”로 하고, 항공사무관 “16”을 “18”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를 “5”로 하고, 항공주사 “25”를 “27”로 한다.

별표 7의2 총계 “982”를 “996”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980”을 “994”로 하며, 일반직 계 “970”을 “984”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0”을 “61”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6”을 “27”로 하고,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

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9”를 “1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항공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을 “5”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을 “2”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0”을 “61”로 하고, 항공사무관 “16”을 “18”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를 “5”로 하고, 항공주사 “25”를 “27”로 한다.

별표 12 총계 “594”를 “615”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및 일반직 계 “593”을 각각 “614”로 하며, 방송통신주사 “21”을 “22”로 하고, 항공주사 “155”를 “164”로 하며, 항공주사보 “161”을 “172”로 한다.

별표 12의2 총계 “594”를 “615”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및 일반직 계 “593”을 각각 “614”로 하며, 방송통신주사 “20”을 “21”로 하고, 항공주사 “153”을 “162”로 하며, 항공주사보 “161”을 “172”로 한다.

별표 15 총계 및 일반직 계 “35”를 각각 “40”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7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를 신설하며, 행정주사 15 다음에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3”를 신설한다.

별표 16의2 총계 및 일반직 계 “306”을 각각 “310”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305”를 “309”로 한다.

별표 19 제1호가목1)을 삭제하고, 같은 표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하며, 같은 표 2)의 평가기간란 및 같은 표 3)의 평가기간란 중 “2020년 3

월 31일”을 각각 “2022년 3월 31일”로 하고, 같은 표 4)를 삭제한다.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1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령 제60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건축안전팀 및 서울세종고속도로팀”을 “서울세종고속도로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토교통부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공무원 한시정원에 관하여는 시행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21을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스마트도시조성팀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은 2023년 1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스마트도시조성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스마트도시조성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도시경제과장

이 분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철도투자개발과장이 분장한다.

국토교통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61조 관련)

1. 제61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1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 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

2. 제61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1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 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

3. 제61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2월 28일)

총계	4
일반직 계	4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 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철도경찰주사 · 행정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	1

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

4. 제61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시설사무관 1

시설주사 2

5. 제61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

[별표 21]

국토교통부 공무원 한시정원표(국토교통부령 제 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1. 제61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0년 3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	1

2. 제61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1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 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

3. 제61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1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 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

4. 제61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2월 28일)

총계	4
일반직 계	4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 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철도경찰주사 · 행정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 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

5. 제61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시설사무관	1
시설주사	2

6. 제61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국토도시실) ①·② (생략) ③ 국토도시실에 <u>국토정책과 · 수도권정책과 · 지역정책과 · 하천계획과 · 산업입지정책과 · 복합도시정책과 · 도시정책과 · 도시경제과 · 도시활력지원과 · 녹색도시과 · 건축정책과 · 녹색건축과 · 건축문화경관과</u> 및 <u>건축안전팀</u>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u>건축안전팀장</u>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 ⑬ (생략) <u><신 설></u>	제7조(국토도시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국토정책과 · 수도권정책과 · 지역정책과 · 하천계획과 · 산업입지정책과 · 복합도시정책과 · 도시정책과 · 도시경제과 · 도시활력지원과 · 녹색도시과 · 스마트도시조성팀 · 건축정책과 · 녹색건축과 · 건축문화경관과</u> 및 <u>건축안전과</u>를 ----- ---- <u>스마트도시조성팀장</u>----- -----. ④ ~ ⑬ (현행과 같음) <u>⑭ 스마트도시조성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의 지정</u> 2. <u>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 · 시행 및 관리</u> 3. <u>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u>

⑭ ~ ⑯ (생략) ⑰ <17> 건축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제8조(주택토지실) ① ~ ⑧ (생략) ⑨ 주거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 16. (생략) ⑩ · ⑪ (생략) ⑫ 민간임대정책과장은 다음 사	<u>선 및 예산 지원</u> 4. <u>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에 관한 사항</u> 5. <u>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u> 6. <u>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u> 7. <u>스마트도시 국가 시범도시 관련 연구·개발</u> ⑮ ~ ⑰ (현행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와 같음) ⑱ <u>건축안전과장</u>----- -----. 1. ~ 8. (현행과 같음) 제8조(주택토지실)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1. ~ 8. (현행과 같음) <u><삭제></u> 10. ~ 16. (현행과 같음) ⑩ · ⑪ (현행과 같음) ⑫ -----
--	---

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신설>

⑬ ~ ⑳ (생략)

제9조(건설정책국) ① ~ ⑨ (생략)

⑩ 시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1. ~ 13. (현행과 같음)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⑬ ~ ⑳ (현행과 같음)

제9조(건설정책국)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

1. ~ 12. (현행과 같음)

13.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운영 및 개선

14.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 검토·조정

15.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등에 관한 사항

16. 기반시설 실태조사 및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

17.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8.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신 설>

제12조(항공정책실) ① ~ ③ (생략)

④ 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1. (생략)

<신 설>

⑤ ~ ①7 (생략)

제14조(철도국) ① (생략)

② 철도국에 철도정책과·철도운영과·철도건설과·철도투자개발과·철도안전정책과·철도운행안전과 및 철도시설안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⑦ (생략)

<신 설>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19.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항공정책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21. (현행과 같음)

22. 국립항공박물관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⑤ ~ ①7 (현행과 같음)

제14조(철도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철도국에 철도정책과·철도운영과·철도건설과·철도투자개발과·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철도안전정책과·철도운행안전과 및 철도시설안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계

	<u>획의 수립·시행</u> 2. <u>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의</u> <u>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u> 3. <u>민간투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시설사업 기본계획</u> <u>의 수립·시행</u> 4. <u>민간투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실시협약 및 사업</u> <u>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u> 5. <u>민간투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 및</u> <u>평가에 관한 사항</u> 6. <u>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의</u> <u>실시계획 승인·고시에 관한</u> <u>사항</u> 7. <u>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의</u> <u>건설 및 운영 단계의 사업관</u> <u>리에 관한 사항</u> 8. <u>민간투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자금 재조달 등 사</u> <u>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u> ⑨ ~ ⑪ (생략) 제29조(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 국) ① ~ ④ (생략) ⑤ 통신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29조(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 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분장한다.

1. ~ 8. (생략)

<신설>

제61조(한시정원) ①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0년 3월 31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② ~ ④ (생략)

⑤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0년 2월 28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신설>

-----.

1. ~ 8. (현행과 같음)

9. 비상용 통합접근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1조(한시정원) <삭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2022
년 12월 31일-----

-----.

⑥ 택시산업 혁신성장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2월 28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국토교통부령 제60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u>건축안전팀 및 서울세종고속도로팀</u>은 2022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u>건축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건축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건축정책과장이 분장한다.</u> ③ (생략)	국토교통부령 제60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u>서울세종고속도로팀</u> ----- -----. <u><삭 제></u> ③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표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79</u>	<u>993</u>	+14
1 .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u>977</u>	<u>991</u>	+14
·	·	·	
·	·	·	
일반직 계	<u>967</u>	<u>981</u>	+14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59</u>	<u>60</u>	+1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26</u>	<u>27</u>	+1
·	·	·	
·	·	·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 ·	<u>5</u> · ·	<u>6</u> · ·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항공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3</u>	<u>5</u>	+2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 ·	<u>1</u> · ·	<u>2</u> · ·	+1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 ·	<u>57</u> · ·	<u>58</u> · ·	+1
항공사무관 · ·	<u>16</u> · ·	<u>18</u> · ·	+2
행정주사 ·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u>2</u>	<u>5</u>	+3

	.	.	.	
	.	.	.	
항공주사	<u>25</u>	<u>27</u>	+2	
	.	.	.	
	.	.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82</u>	<u>996</u>	+14
1 .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u>980</u>	<u>994</u>	+14
·	·	·	
·	·	·	
일반직 계	<u>970</u>	<u>984</u>	+14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60</u>	<u>61</u>	+1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26</u>	<u>27</u>	+1
·	·	·	
·	·	·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 ·	<u>9</u> · ·	<u>10</u> · ·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항공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3</u>	<u>5</u>	+2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 ·	<u>1</u> · ·	<u>2</u> · ·	+1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 ·	<u>60</u> · ·	<u>61</u> · ·	+1
항공사무관 · ·	<u>16</u> · ·	<u>18</u> · ·	+2

행정주사 ·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u>2</u>	<u>5</u>	+3
·	·	·	
·	·	·	
항공주사	<u>25</u>	<u>27</u>	+2
·	·	·	
·	·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지방항공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5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94</u>	<u>615</u>	+21
1 .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u>593</u>	<u>614</u>	+21
일반직 계	<u>593</u>	<u>614</u>	+21
.	.	.	
.	.	.	
방송통신주사	<u>21</u>	<u>22</u>	+1
항공주사	<u>155</u>	<u>164</u>	+9
.	.	.	
.	.	.	
항공주사보	<u>161</u>	<u>172</u>	+11
.	.	.	
.	.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의2]

지방항공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94</u>	<u>615</u>	+21
1 .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u>593</u>	<u>614</u>	+21
일반직 계	<u>593</u>	<u>614</u>	+21
.	.	.	
.	.	.	
방송통신주사	<u>20</u>	<u>21</u>	+1
항공주사	<u>153</u>	<u>162</u>	+9
.	.	.	
.	.	.	
항공주사보	<u>161</u>	<u>172</u>	+11
.	.	.	
.	.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5]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8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5</u>	<u>40</u>	+5
일반직 계	<u>35</u>	<u>40</u>	+5
·	·	·	
·	·	·	
행정사무관	7		
<u>행정사무관</u> 또는 <u>시설사무관</u>	<u><신 설></u>	<u>2</u>	+2
행정주사	15		
<u>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u>	<u><신 설></u>	<u>3</u>	+3
·	·	·	
·	·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의2]

항공교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10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06</u>	<u>310</u>	+4
일반직 계	<u>306</u>	<u>310</u>	+4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05</u>	<u>309</u>	+4